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회

“디지털시대, 비영리법인 의사결정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



2021년 12월 16일 (목) 오후 2시 온라인 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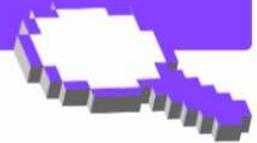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 제도개선 토론회

위드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술의 진화로 인해 우리의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단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구조인 총회 역시, 시대에 맞는 운영방식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그 변화를 넘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총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시간	구분	내용	발표자
14:00-14:05 (5')	소개	참석자 소개 및 주요 내용 소개	사회자
14:05-14:10 (5')		토론회 취지 및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 TFT 주요 논의경과 소개	권오현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소통분과 간사/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14:10-14:20 (10')	여는 말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확대의 중요성에 따른 총회 방식의 전환	실시간공문장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14:20-14:30 (10')	현장 사례	사례 ①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온라인총회” — 전국의 비영리법인에게 물었습니다.	김유리 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
14:30-14:40 (10')		사례 ② “온라인총회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누구도 명쾌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온라인총회	이현아 생명이슈 협동사무처장
14:40-14:50 (10')	쟁점 이슈	쟁점이슈 ① <의결장소> — “실제적 의결장소”로서의 온라인 공간 인정 방안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0-15:00 (10')		쟁점이슈 ② <의결방식> — 온라인총회 의결방법과 전자서명 도입 방안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변호사
15:00-15:10 (10')		쟁점이슈 ③ <의사록인증>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의 적극 활용 방안	양승원 공증인양승원사무소/ 변호사
15:10-15:20 (10')		온라인총회 및 인증제외대상 법인현황과 제도운영방식	김홍정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15:20-16:00 (40')		종합토론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청중 질의응답 포함 청중 온라인 참여

* 추후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정보 아카이브>에 자료집 업로드 예정

공동주최 녹색연합·사회적협동조합 빠띠·서울시NPO지원센터·재단법인 동천·환경운동연합
공동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서울시NPO지원센터·재단법인 동천

목차

<여는말>	2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확대의 중요성에 따른 총회 방식의 전환	
<사례1>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온라인총회”	31
전국의 비영리법인에게 물었습니다	
<사례2> “온라인총회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46
누구도 명쾌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온라인총회	
<쟁점이슈1> 의결장소	63
“실제적 의결장소”로서의 온라인 공간 인정 방안	
<쟁점이슈2> 의결방식	76
온라인총회 의결방법과 전자서명 도입 방안	
<쟁점이슈3> 의사록인증	86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의 개선 방안	
온라인총회 및 인증제외대상 법인현황과 제도운영방식	102



<여는말>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확대의 중요성에 따른 총회
방식의 전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실시간 공론장팀)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회 “디지털시대, 비영리법인 의사결정방식의 전환이 필요할때”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확대의 중요성에 따른 총회방식의 전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실시간 공론장팀

Parti

더 민주적인 세상

일상에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확산시킵니다
Democracy More & Better, Everyday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빠띠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 플랫폼

빠띠 카누
협력적 커뮤니티

민주적인 팀과 커뮤니티의 협력 플랫폼
parti.xyz

빠띠 캠페인즈
시민 주도 캠페인

세상을 바꾸는 시민들의 캠페인 플랫폼
campaigns.kr

빠띠 믹스
공론장과 정책개발

일상의 공론장 플랫폼
parti.mx

빠띠 타운홀
실시간 의사결정, 총회

실시간 토론과 투표 플랫폼
townhall.kr

빠띠 데이터퍼블릭
공익데이터와 시빅해킹

시민주도 공익데이터 플랫폼
datapublic.kr

총회 되돌아 보기

Parti

총회란?

총회는 (비영리)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대상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다수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나요?

정관-규약개정 공유 및 승인, 예산집행계획전달 및 승인,
전년도 사업내용 공유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전달 및 승인,
중장기적인 계획 공유 등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총회 참여자들의 생각은? 🙋🙋

‘참여하기도 어렵고, 참여해도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정보가 독점되고 있어요. 결정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일이라고요.’

‘무조건 오늘 이 시간에 결정을 내려야겠죠?’

‘총회 현 방식 말고 더 좋은 방법 없나요? 이게 최선인가요?’

총회 전

정보격차

- 정보의 질과 양에서 압도적인 실무진, 운영진과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일반 회원들
- 참여 정도에 따라 활동 및 사업 이해도가 다른 구성원들

실무 부담

- 1년에 1~2회 있는 행사이므로, 대내외에 잘 알려야 한다는 압박감
- 구성원 전원을 빠뜨리지 않고 총회 내용을 전달해야한다는 부담감

매뉴얼 부재

- 정해진 가이드를 찾기 어려움
- 아카이빙이 잘 되어있는 경우가 드물어 이전사례 참고 어려움
- 경험과 노하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많음

총회 당일

참여

- 현장 참석보다는 위임이 다수일 때
- 참석인원 별 총회자료 숙지 정도 다름
- 총회 보다는 뒤풀이 등에 더 관심 있는 경우

딜레마

- 정보격차 속에서 형식적, 의례적 진행으로 가기 쉬움
- 토론할 것인가? 결정할 것인가?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음
- 의견을 많이 내면 총회 진행 시간이 길어지고 책임이 많이 따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의견 숨김

총회 후

동력

- 총회 당일 이후 실무진의 급격한 에너지 소진
- 총회 결과를 바로 알리기 어려움
 - 결과를 정리하여 알리기까지 시간격차 존재
 - 품이 많이 드는 행정처리

기타

- 비공식 대화(뒤풀이 등)에서 더 활발히 제시되는 의견은 기록되지 않음
- 총회 의사결정을 실무과정에 완벽히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간단히 정리하면,

1) 정보격차, 딜레마 → 정보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 동력, 참여 → **참여를 활성화하고, 확대**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활용

Parti

총회에서의
의사결정 및 참여확대의 중요성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현실은 이처럼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확대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온라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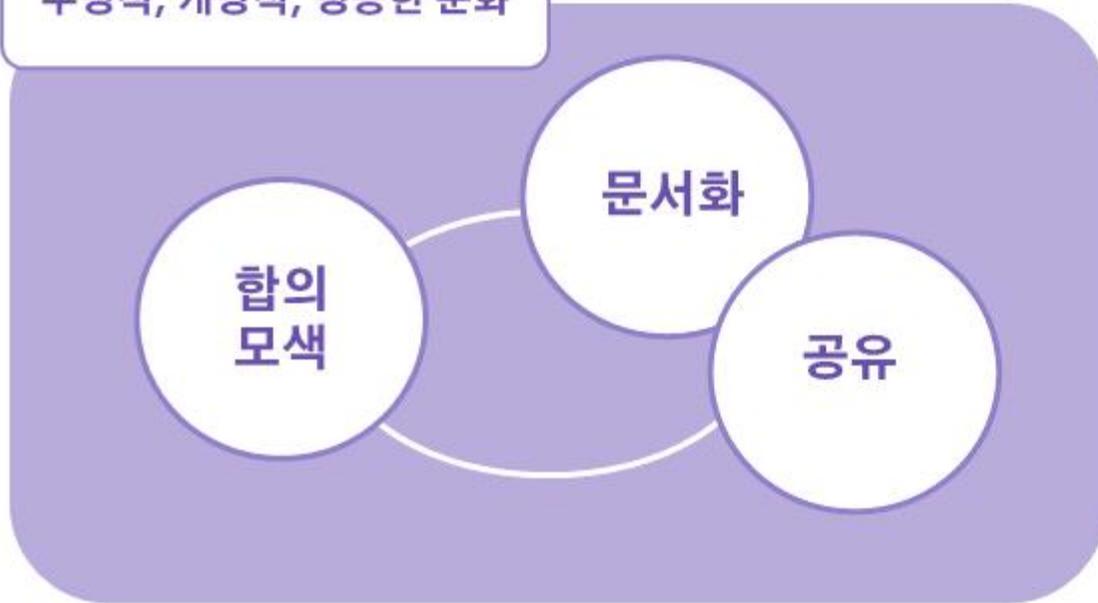
의사결정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개의 행동집합에서
어떤 특정의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평적, 개방적, 평등한 문화



Parti Democracy Party
tells it its way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확대 - 온라인의 장점

정보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공유 창구와 시간 확보의 용이함.

참여

온라인은 공간제약 없이 진행 및 참여할 수 있으므로 참여의 통로가 확장됨.

아카이빙

의결과정과 의결내용에 대한 논의 등 전반적인 아카이빙이 수월함.

합의

최종 의사결정 전에 온라인 투표도구 등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적 논의 및 합의 가능함.

유동성

의사결정 후 집행 중에도 아카이빙 자료 활용과 동일 프로세스를 거쳐 더 적합한 결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음.

핵심내용



첫째, 충분한 정보제공

- 온라인을 통해 다양하게(문자, 영상, 카드뉴스) 정보가 전달 될 수 있으므로, 정제된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제공
- 안건에 대한 정보 외에도 총회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과정들도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둘째, 참여기회 극대화

-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노력
- 사전교육, 사전토론, 간담회 등으로 참여 폭 넓힘
-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의견들을 함께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셋째, 효율적인 진행과 사후관리

- 총회 당일 안건에 집중할 수 있고, 의견제시 및 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세팅. 사전 토론 및 교육, 간담회등을 사전에 배치 토론 진행
- 정확하게 기록하고 아카이빙하여 총회 이후에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관리

디지털(온라인)을 활용한 민주적 의사결정 사례

Parti

온라인 총회 진행 사례

투표로 일시 정하기



투표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시 등을 정해요.

위키로 정보 공유 & 안건 모으기



공동편집 위키로 총회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안건을 모아요.

게시물 토론하기



안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토론이 열리기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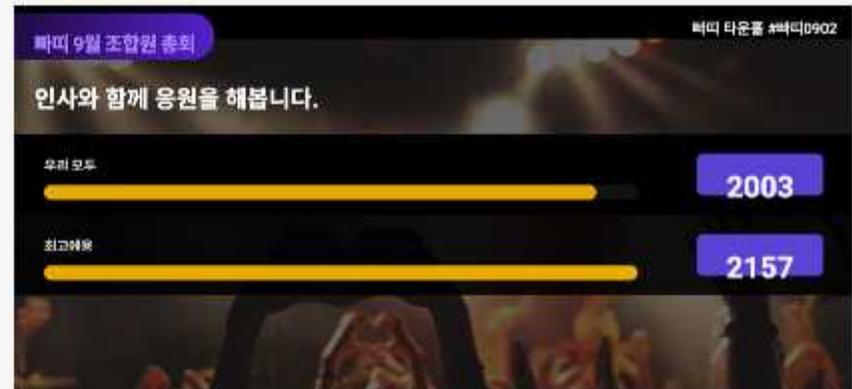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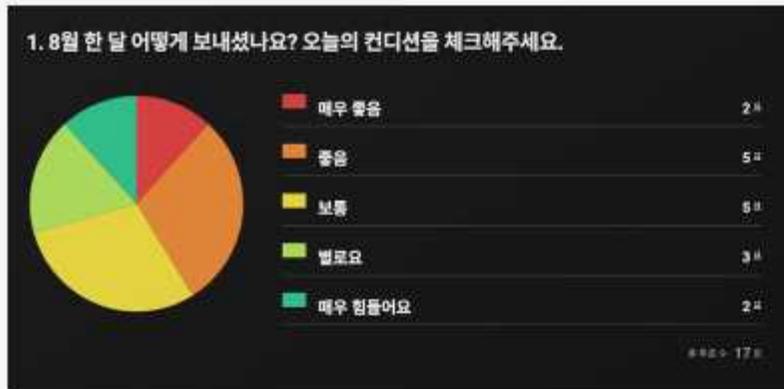
아카이빙 하기

총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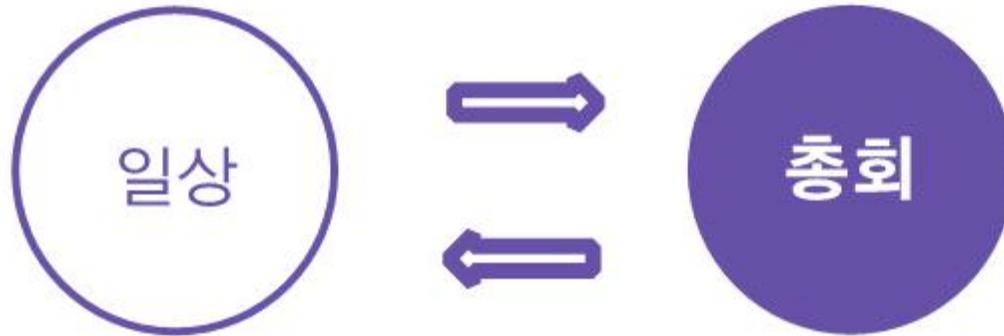


온라인 총회 이후엔, 위키에 기록을 아카이빙합니다.

온라인 총회 진행 사례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총회 준비 및 진행



1. 의사결정 및 논의 플랫폼 ‘빠띠 카누’ 상시 운영

- a. 일상적으로 공동의사결정할 논의 안건 수집
- b.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토론 진행

2. 월1회 총회 운영

- a. 일정 투표 → 안건 초안 작성 및 관련자료 배포 → 추가 아젠다 수렴 및 토론 진행, 안건 확정
- b. 회의관련 링크 전달(화상회의링크, 의사결정링크, 공동문서링크)
- c. 화상회의를 통해 총회 개최 및 진행 → 총회 기록 공동작성

3. 총회 이후 공동작성한 기록을 ‘위키’에 아카이빙, 언제나 열람 가능

온라인 활용이 각 분야에서 **활성화**
되고 있고, 장점과 효용성도 큼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Parti

총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 구성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의 환경변화**가 온라인 총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를 확대시키고, 이제 익숙한 환경이 된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제 더 이상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유명무실한 총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확대를 위한
좋은 방법은 온라인 총회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 입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발걸음에 **함께**해주세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Parti



<현장사례1> 전국 비영리법인에게 물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온라인 총회”

김유리(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나만 힘들게 아니었네!”

서울시NPO지원센터 김유리 팀장

우리의 문제의식 “온라인총회, 이대로 괜찮은 걸까?” (1)

■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활동 경과

- '20.2. 시민사회 “온라인총회, 해도 된다 vs. 안 된다.”
 -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7, 법무부)> 유권해석 필요성 제안
 - (기존)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 '20.3.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코로나19 상황에 한정한 한시 허용)
 - 총리실, 법무부 외 관계부처 협의 진행 및 보도자료 배포
 - (변경)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 가능”

한국기부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 해도 된다 vs. 안 된다?”

서울시NPO연대 2022.2.28. 20:14

100% 후원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에 직면하면서 원·단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점이나 다양한 취소와 연기 등 애로사항이 있다. 특히, 매년 수백 건의 소송이 유권해석에 관하여 제기되는 등 임의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함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총회 개최 이후 관련 법령사항을 주·관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서명제와 및 실적 보고를 해야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특히 지금의 상황이 당혹스러울 듯 하다.

우리의 문제의식 “온라인총회, 이대로 괜찮은 걸까?” (2)

■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활동 경과

- '20.12.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및 이사회 상시 허용” 확대

- 총회 개최 방식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없어 법적 가능성과 업무 처리 소관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존재
- (총리실) 온라인총회 상시허용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20.10.~11.) 및 법무부와 방안 논의('20.11.)
- (법무부) 온라인총회 상시허용을 위한 지침 개정('20.12.) 및 총리실 보도자료 배포

- (기본방향)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
- (출 석) 온라인총회 방식은 사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하며 동영상과 음성의 동시 송수신이 가능한 장소에서 출석·진행
- (결의방법) 동일성이 확인된 온라인출석 사원은 거수,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라 결의권 행사 가능

우리의 문제의식 “온라인총회, 이대로 괜찮은 걸까?” (3)

■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활동 경과

• '21.2. 온라인총회 시, “실제적 의결장소”에 대한 해석 차이 발생

- (법무부) 온라인총회 의사록 **참석인증** 지침 안내

- (기준 1) 공증인은 ① 의결장소에 직접 참석(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제1호), ② 개회에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진행상황, 결의의 성립 여부 검사(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증인으로서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예 : 의장실)에 직접 참석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검사해야 함.
- (기준 2) 공증인은 총회의 결의 절차 및 결과의 위·변조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참석자의 동일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① 온라인(화상)에서는 참석자의 동일성 등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인증된 의사록이 법인등기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총회 결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

- (시민사회) '온라인 공간'도 실제적 의결장소로서 동일성을 지니는 장소로 인정 필요성 제안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병행 제안)

우리의 문제의식 “온라인총회, 이대로 괜찮은 걸까?” (4)

■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활동 경과

- '21.3. 총리실·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 의사록 인증기준” 마련
 - (총리실) 보도자료 배포
- '21.3.~12. 시민사회 “온라인총회 제도개선을 위한 TFT” 구성 및 운영
 - (참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재단법인 동천, 서울시NPO지원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5개 기관
 - (TFT) 총리실과 공동 회의 2회 진행(4월, 5월)
 - (TFT) 단체 대상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4월)
 - (총리실) 법무부 2차 의견 검토 요청(5월)
 - 온라인총회 의사록 참석인증 관련 <불수용> 회신 : 공증인의 온라인 참가만으로 총회 의사록 참석인증 인정 어려움.
 - (시민사회위원회)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 소통분과 제도개선 과제 상정(9월), 시민사회위원회 안건 논의(10월)
 - (TFT) 제도개선 토론회 기획(11월)

전국의 비영리법인에게 물었습니다.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1. 4.7.(수) ~ 4.23.(금) 17일간
- 조사방법 : 웹서베이
- 조사대상 : 전국 비영리단체
- 응답자수 : 총 127건
- 주요내용 : 총회 진행방식, 온라인총회 개최시
어려운 점,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우선순위 과제 등



응답단체 유형

단체 유형은 무엇인가요?

응답단체 유형



대부분 비영리단체는 회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지만, 단체의 유형에 따라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다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설문결과를 함께 살펴볼까요?

- 사단/재단법인 등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46%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단체 23%
- 온라인총회 이슈(특히, 공증이슈)와 연관된 단체는 약 50%(법인/사회적협동조합)

<민법 명시 사항>

- 사단법인 최고의사결정기구 : 회원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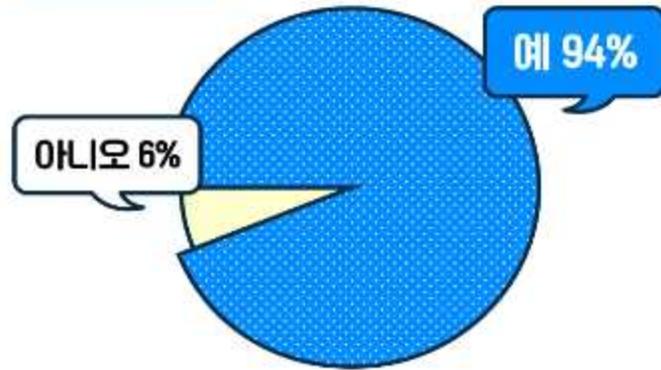
「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총회 개최여부

올해 총회는 진행하였나요?

2021 총회진행여부



조사 시점이 2021년 4월 중순 시점이어서 대부분 총회는 이미 마친 상태였어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체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사업실적 등의 보고를 해야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총회 개최시기도 고려하면 좋을 듯 해요.

- 조사 시점 당시(4월) 대부분 단체는 이미 총회개최 완료
- 비영리법인의 경우, 매년 2월(통상적으로) 말까지 주무관청에게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하므로 정기총회 개최 시점 유의 필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나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총회 진행방식

올해 총회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였나요?

2021 총회 형태



“온라인총회, 비영리조직 운영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인지 온오프라인 병행을 포함하여 약 82%가 온라인총회를 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온라인총회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어요.

- 약 47%의 단체가 온라인총회로 개최
(단체 설립근거법에 따른 유형별 구분 생략)
- 온·오프라인 병행, 서면총회까지 포함할 경우,
약 92%가 비대면방식으로 총회 개최
-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온라인총회, 서면총회
등의 비대면총회가 활발했는지 확인 불가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온라인총회 시 주로 사용한 툴

온라인총회 시 주로 어떠한 툴을 사용하였나요?

온라인총회 사용툴



"단체와 회원 모두 가장 익숙한 온라인 소통 도구 ZOOM"

단체와 회원 모두 가장 익숙한 툴이어서 사용했다고 해요. 자료공유는 구글드라이브, 노션, 메일을 통해, 의결은 줌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줌(ZOOM) 88%
 - 의사결정 및 소통은 줌으로!
(단체 활동가, 임원, 회원 모두 가장 익숙한 툴)
 - 의결 자료공유는 드라이브, 노션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활용

▶ 줌, 구글설문, 밴드, 메일, 빠띠타운홀, tally forms, OBS, 코클루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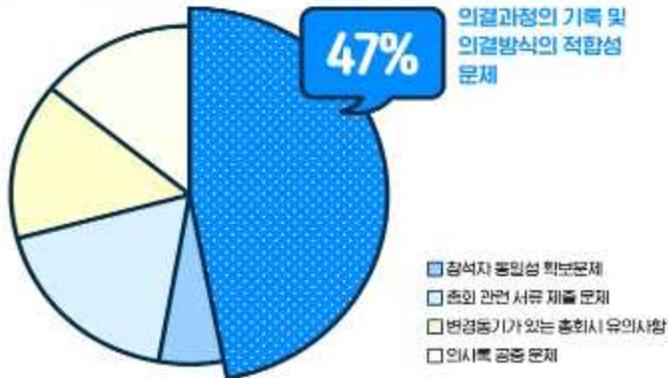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온라인총회 시 어려운 점

온라인총회 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온라인총회시 어려운 점



“온라인총회 시 의결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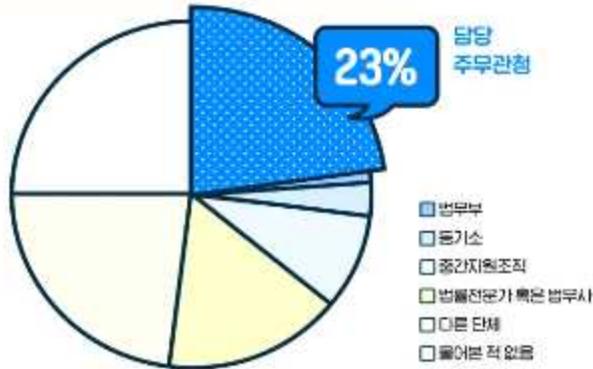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오프라인총회와는 다르게 특별히 유의할 건 무엇인지 등 누구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 (1) 제도적 한계, (2) 기술적 한계로 유형화
- 의결과정의 기록 및 의결방식의 적합성 문제(47%)
- 총회 관련 서류제출 문제(18%)
- 변경등기가 있는 총회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문제(15%)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한 파트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물어보았나요?

온라인총회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질의한 곳



“온라인총회, 누구도 정확하게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66%가 1곳 이상에게 물어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단체와 담당주무관청에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같은 사안에 대해 물어보는 곳마다 다르게 해석하여 어려움이 컸다고 해요.

- 전체 응답자 중 약 66%가 한 곳 이상에게 문의
 - 담당 주무관청(23%)
 - 다른 단체(23%)
 - 중간지원조직,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법률구조공단, 국무총리실에도 문의

- 주요 문의사항
 - 온라인총회 가능여부, 서면총회 가능여부,
 - 회의진행방식(의결방식, 의사록작성방식, 참석자 동일성 확인방식 등)

- ◆ 온라인총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했으나, 행정처리이슈로 임시총회(오프라인)를 다시 개최하는 사례들도 확인됨.

누구와 논의를 해야하는가?

“온라인총회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을 누구에게 확인해야 하는가?”

-  주무관청
 - 법인 관리감독청
 - 법무부
 - 국무총리실
-  등기소
 - 공증인
 - 법무사사무소
-  중간지원조직
 - 전문가(법률) 상담
-  다른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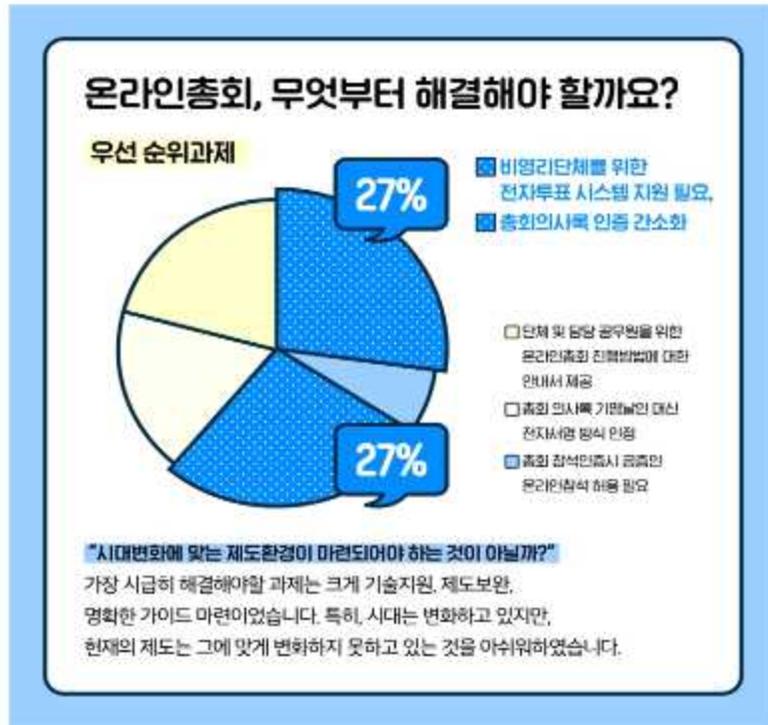
민법의 구속력



변경등기 절차의 문제

- 많은 경우의 수와 고려해야 할 변수들(예시)
 - 조직 형태에 따라? (민법상 법인일 경우 /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일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일 경우)
 - (법인의 경우) 변경등기가 필요한 총회 개최의 경우?
 - 총회 개최 후, 주무관청에게 총회 결과보고 제출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변경등기시에 총회 절차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 정관에 명기되어 있고, 절차만 준수하면 문제 없다. vs. 온라인으로 '만'하는 건 안 되고, 의장과 사무국은 최소한 오프라인참석을 해야한다.

우선 해결과제



- (1) 제도 보완, (2)기술적 지원, (3) 세부가이드 정비로 유형화
- 총회 의사록 인증 간소화(27%)
- 비영리단체를 위한 전자투표시스템 지원(27%)
- 온라인총회 안내서 제공(21%)
- 기타 : 총회의사록 기명날인 대신 전자서명 방식 인정(18%), 총회 참석인증시 공증인 온라인참석 허용 필요(7%)



<현장사례2> 누구도 명쾌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온라인 총회
“온라인총회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현아(생명의숲 협동사무처장)



온라인총회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토론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만나는 숲

모두가 누리는 5분 거리의 숲.
생명숲이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갑니다.



총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명의숲 실행경과

결론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1. 등기변경을 위해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총회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2. 주무관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되도록 기존방식의 운영형태를 권고함.
3. 법무법인 등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 온라인 총회가 적절한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받지 못함.
4. 가이드라인이 없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총회를 실행할 경우 추후 주무관청 허가, 등기변경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를 다시 해야함.
5. 회원에게 대면총회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대면총회를 진행함.
6. 총회 성립 최소요건만을 채운 상황에서 대면총회 실행함. 총회 자체의 회원참여가 최소화될 수 밖에 없음.

A단체 실행경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총회? 제한된 참여와 사각지대

1. 2021년 ZOOM으로 대의원이 참여한 온라인 본회의 개최, 의결권 없는 회원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 진행
2. 의사록 공증을 위해 인감날인, 인감증명서가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내에 거주하거나 기간안에 제출이 가능한 대의원 참여 요청
3. 본회의장은 줌, 의결권이 없는 회원, 대의원이 아닌 회원들을 위한 유튜브 생중계를 했는데, 보조 매체였던 유튜브가 의견 개진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과정에 더 적극적임.
4. 줌 매체 자체가 접근이 어렵고 활용능력이 없으면 의결 과정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음.
5. 수어 통역이 되지 않아 장애 회원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음.
6. 장애유무, 세대, 활용능력에 따라 온라인 매체 활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온라인총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온라인총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며,

...

총회 개최 방식 등 구체 사안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기관인 주무관청과 협의 바람.

[출처]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상시적 허용" (2020.12.23.)

.....

- 온라인 총회 진행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주무관청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의사록 공증을 위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법무법인, 전문가 마다 다름. 등기소에 문의 시 답변한 직원마다 다르기도함.
- 등기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정확한 지침없다면 이후 등기변경이 반려될 상황을 고려해 기존 방식을 고수할 수 밖에 없음.



누가 알려주나요? 주무관청? 법무법인? 전문가?

실제적 의결장소는 어디인가요

관계 법령에 따라 온라인(화상) 총회가 허용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 대해서도 아래 기준에 따라 참석인증 방식으로 의사록 인증 허용

[기준1] 공증인은 온라인 총회 의사록 참석인증 시 관계 법령 엄격 준수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예:의장실)에 직접 참석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검사

[출처]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2021.3.15.)

.....

-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인원은 오프라인에서 만나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공증인은 그 장소에 직접 참석해야 함.
- 이 경우 의장이 있는 위치에 공증인이 있어야 하는지. 의장과 법인 관계자 중 어느 범위까지 공증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가



결국 완전한 온라인 총회는 불가능?

참석자의 동일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계 법령에 따라 온라인(화상) 총회가 허용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 대해서도 아래 기준에 따라 참석인증 방식으로 의사록 인증 허용

[기준2] 공증인은 총회를 개최하는 법인 측에서 참석자의 동일성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검사

[출처]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2021.3.15.)

.....

-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온라인 총회 시 총회에 참여하는 참석자에 대한 적합한 식별방식과 의결 방법, 의결과정의 기록방법은 중요한 문제
- 참석자 개별식별방식 : 접속정보를 제출해야한다고 안내한 주무관청도 있음. 접속정보에 대한 수집이 가능한가?
- 기록방식 : 회의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 샷? 전체 진행과정을 녹화한 녹화본?
- 의결방법 :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할 경우 찬성, 반대의 수는 어떻게 세며 어떤방식으로 해야 적합한 것인가?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공법인의 경우,

①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다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이 필요함.
- 관련해 질의했을 때 해당 제도에 대한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기도 함.
- 제도 자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해와 기존 사례에 대한 공유가 필요



전자서명은 가능한가요

정관변경 필요서류 제출시 (변경등기와 관계없이)

- 주무관청에 따라 이사 날인 및 간인이 포함된 총회 회의록 사본을 실물로 제출하게 되어 있음.
- 전자서명으로 간인을 삽입할 수 있나요?
- 법적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주무관청에서 반려할 경우 의미없는 문서에 불과

변경 등기를 할 경우

- 변경등기 시 인감 날인 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을 실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내 별도의 전자서명으로 진행해야 함.
- 실물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전자등기 방식 또한 등기소를 통해 전자서명해야하므로 사전 실행한 전자서명은 활용할 수 없음.



많은회원이 참여해도 되나요

비영리법인 총회 개최 방식에
원격통신을 통한 방식 추가
온라인 시민참여 확대 기대

.....

- 정확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지 않는 한 의사록 공증 사안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필요인원만 참여하는 형태이거나 대면총회를 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임.
- 지역의 한계를 넘어 이동의 제약 없이 많은 회원이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총회의 장점!
- 장점을 살리면서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온라인 총회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조직에 적합한 총회 방식 찾기

우리 조직은?

~~대면총회 VS 온라인총회~~

조직의 상황과 참여하는 회원의 연령대, 거주지역 등 구성에 따라 온라인총회보다 대면총회가 적합한 형태일 수 있음.

그러나 코로나 19와 같이 대면총회 자체가 쉽지 않을 경우 안전한 운영을 위해 온라인총회가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함.

사단법인 회원총회는 단순히 의결기구 이상의 의미로 다양한 회원 소통의 장으로 기능함. 이후 코로나 거리두기가 사라지더라도 대면 총회는 온라인을 겸한 총회로 가는 것이 기본이 될 것. 이를 위한 명확한 지침 필요

변화에 대응하여 선택의 폭 넓히기



사각지대 없애기

누군가에게는 쉬운 줌, 구글미트, 팀즈...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렵다.

어플을 설치하는 것, 음성메시지를 켜는 것,
채팅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모두가 난관의 연속

개인이 화면상에 식별이 되려면 노트북, 스마트폰,
웹캠이 설치된 데스크탑이 필요

화면공유와 채팅창 기능 중심으로 진행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수어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참여가 쉽지
않음.



총회방식 찾기

단체의 성격, 회원의 구성에 따라
적절한 총회 방식을 찾고
참여자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함.

더불어
이러한 단체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총회가
적합한 형태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적절한 가이드 제공이 필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생명숲은
시민의 힘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보전하며,
숲의 공공성을 높여 누구나 숲의 가치를 누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FOREST FOR LIFE



<정책이슈1> 의결장소

“실제적 의결장소”로서의 온라인 공간 인정 방안

송호영(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제적 의결장소”로서의 온라인 공간 인정 방안

I. 현행법의 현황

1. 총회 및 이사회회의 개최

가. 사원총회의 개최

■ 민법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됨.

나. 이사회회의 개최

- 민법: 민법에서는 이사회가 필수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공익법인법

제8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

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결의 사항 및 방법

■ 민법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법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 비대면결의에 관한 입법례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1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

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2.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II. 문제점

1. 온라인총회의 법적근거 부재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민법 제73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음. 이때 서면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글씨를 쓴 지면이나 일정한 내용을 적

은 문서를 포함하여 이메일 등의 '전자서면'을 포함함.

- 여기서 전자서면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는 전자투표와는 구별하여야 함. 전자서면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는 현장총회에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되 그 서면이 전통적인 지면(紙面)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반해, 전자투표는 결의권을 현장총회에서 행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된 시스템에 따라 비대면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됨.
- 그렇다면 민법 제73조 제2항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서면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를 곧 비영리법인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새길 수는 없음.

※ 독일의 코로나단체법의 신속 제정

- 독일 전역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져나가 그 영향으로 사생활 및 경제생활이 현저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입법자들은 신속절차(Eilverfahren)를 통해 이른바 코로나법(Corona19-Gesetz)을 제정하였음. 동 법률은 2020. 3. 23. 연방정부내각의 의결 이후 2020. 3. 27. 법률로 공포되어 2020. 4. 1. 발효될 때까지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됨.
- 현행 독일 민법에 의하면 사단의 사무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해짐(제31조 제1항 1문). 이때 사원총회란 현장 총회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단체법 제5조 제2항은 비록 법인 정관에 규정된 바 없더라도 이른바 버츄얼 총회의 개최를 가능케 하고 사원이 현장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즉, 법인의 이사회는 정관에서 권한을 부여함이 없더라도 ① 사원총회에 있어서 총회 장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전자적 통신 방법을 통하여 사원권을 행사하는 것, ② 사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서 투표권을 사원총회가 실행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①호는 전자적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전화회의나 화상회의를 통한 버츄얼(온라인) 총회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이때에도 일부는 현장총회에 참석하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함. ②호는 사원으로 하여금 총회 개최 전까지 '미리' 서면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인데, 이때의 총회는 대면 총회든 비대면 총회든 가리지 않으며,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한 서면투표와

현장투표가 혼합된 이른바 혼합된 결의(gemischte Beschlussfassung)도 가능함.

2. 특히 총회(이사회) 장소의 문제

- 우리 민법이나 공익법인법은 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를 위해 소집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총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회의 장소가 반드시 물리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특히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더라도 대부분의 법인 정관에는 총회 장소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규정을 두더라도(예, 본 협회 강당에서 개최) 대개는 주소지가 정해질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렇다면 상법 등 전자투표를 인정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총회의 개최장소를 전자투표를 전제로 한 가상의 공간으로 정하여 소집·개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III. 현행법상 해석론

1. 서면결의와의 관계

- 민법은 총회의 결의권 행사와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를 인정하지만(제73조 제2항), 공익법인법은 이사회를 서면결의를 허용하지 않음(제9조 제3항). 이러한 결의방법에 관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규정은 입법당시 현장총회 내지 현장이사회를 개최를 전제로 한 것이며, 입법자가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와 같은 비대면방식의 총회 및 이사회는 예상하지 않은 것임.
- 민법이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서면결의를 인정한 것은 현장총회에 참가할 수 없는 사원이 많은 경우에 총회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유회가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입법적 배려라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현장총회 개최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같이 불가피한 비대면상황에 의해 총회 자체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의 민법규정을 문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 또한 공익법인법에서는 명문으로 이사회를 서면결의를 허용하지 않는바,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평시가 아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익법인에 대해 서면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냐가 문제됨.

2. 비영리법인 총회의 “소집”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민법 제73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음. 이때 서면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글씨를 쓴 지면이나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포함하여 이메일 등의 ‘전자서면’을 포함하는 데, 비영리법인이 있어서 서면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를 위해 반드시 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 현행 민법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제69조),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함(제71조). 이러한 민법 조문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총회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며,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서면결의(즉, 회람결의)는 현행민법의 해석으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여기서 총회의 소집이 문제될 수 있는데,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원에 대해 총회 소집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적법한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즉, 총회의 개최장소에 대해서는 민법에 분명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오프라인상의 장소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또한 서면에 의한 결의가 가능하므로 전자서면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서면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는 가능함. 서면에 의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민법 제75조 제2항) 이론상으로는 현행민법에서도 총회의 결의를 위해 일단 적법한 총회소집만 있으면 ① 일부사원은 현장 출석을 하고 다른 사원은 서면으로 출석을 갈음하여 의결할 수도 있고, ② 전체 사원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결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됨. ②의 경우는 우리 상법이나 독일민법이 인정하는 회람결의와 상당히 유사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회람결의는 총회소집자체가 필요 없지만, ②의 경우는 온라인상으로도 총회소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3. 공익법인 이사회의 “소집”

-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제6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하며(제8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음(제9조). 공익법인법에 의해서도 유효한 이사회 결의가 되려면 적법한 이사회의 소집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공익법인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해 처리될 수 없으므로 소집을 통지받은 이사들은 이사회에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의사의 찬성여부만을 묻는 사원총회

와 달리 이사회는 변화가능한 여러 안건을 놓고 상호의견을 통하여 최적의 결론을 내야하는 협의체기구이므로, 기관의 특성상 서면결의를 허용하기 어렵다. 다만 이사회의 ‘소집’장소를 오프라인 중심의 현장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온라인상 상호소통이 가능한 인트라넷이나 초대링크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도 소집장소를 공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그러한 공지된 온라인상 장소에 접속하여 이사들의 동일성이 확인가능하고 온라인상으로 출석한 이사들 사이에 상호의견이 가능한 통신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공익법인 이사회의 결의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한 쌍방향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결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결의가 아니라 일종의 현장결의로 보아야 함.

4. 전자투표의 유효성

- 「상법」, 「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과 달리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게는 전자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전자투표는 현장투표의 난점을 들어주기 위한 보완적 기능을 하는 선택적 사항이지,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반드시 전자투표를 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님.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현장에서 의결권행사와 달리 주주의 동일성 파악 등 여러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분쟁의 여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명문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임.
- 민법이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민법제정당시의 입법자들이 현장총회에서의 결의를 원칙적인 모습으로 삼고 보완적으로 서면 및 대리인에 의한 결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총회의 결의방법은 충분하다고 본 것 일뿐, 새로운 형태의 결의방법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임. 전자투표제도를 통하여 영리법인인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①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의결권확보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② 사원에게는 총회 참석의 어려움을 들어줄 이유가 있으면 전자투표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민법이 서면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전자투표의 유효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음. 다만 전자투표를 의결권행사방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원들이 전자투표를 유효한 결의방법으로 수용한다는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법인의 정관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전자투표는 현장투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단자치 내지 정관자치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그 이유는 전자투표는 원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확보

를 위해 간이한 결의방법으로 인정된 것인데,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것으로서, 이사회는 (주주 또는 사원)총회와 달리 안건에 대한 찬반만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에 대해 상호의견을 통하여 최적의 결론을 내야하는 협의체기구이므로 공익법인법이 서면결의를 허용하지 않는 연장선상에서 공익법인의 정관에서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그에 따라 실시된 전자투표에 의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지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자투표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사회 기능과 역할에 맞게 이사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자투표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임. 공익법인의 이사회가 화상회의와 같은 원격통신수단을 통하여 이사회를 개회하고 동 회의를 통하여 이사들 사이에 안건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면 이는 현장회의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러한 방식의 회의에서는 결의를 위한 방법으로써 거수로서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투표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투표로 결의하기로 의결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결의를 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5. 새로운 형태의 총회의결방식의 유효성

- 온라인 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하는 사원 또는 이사의 본인확인절차는 현장투표가 아닌 상황에서 결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대해 전자투표 이외에 다른 원격통신방법에 의한 의결방식도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됨. 예컨대 모바일 통신기기의 다자간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플랫폼회사가 제공하는 다자간 메신저 서비스(예컨대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표를 유효한 결의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됨.
- 생각건대 비록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본인확인과 그가 행사한 표결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투표 외에 기타의 원격통신에 의한 투표에 의한 결의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문제는 본인확인과 투표자의 동일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임. 다자간 영상통화의 경우에는 화면을 통하여 참여 사원의 동일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다자간 문자메시지나 다자간 메신저 서비스 등을 이용한 투표의 경우에 참여한 자의 본인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보다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또한 그러한 방식의 투표에 대해서도 그 결의 과정과 결과가 보존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와 같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전자투표 외에 새로운 원격통신방법에 의한 결의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됨. 다만, 새로

은 방식의 원격통신결의는 전자투표의 수준으로 본인확인절차나 투표자의 동일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비상상황에서 제한적·예외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임. 가령 온라인총회 개최일에 즈음하여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투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전자투표관리기관이 해킹되어 공정한 투표관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음.

IV. 입법론

1. 입법형식

- 민법에 규정하는 방안 vs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안. 양 방안은 입장일단이 있음.
- 민법에 비대면 결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공익법인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조합,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을 준용하는 대부분의 법인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개정 없이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 비대면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등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법이 개정되면 다른 법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법률들과의 연관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하므로 정작 법률 개정작업이 상당기간 지체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그에 반해 비영리법인에 대해 비대면 결의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일반 법인 민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의 일반법인 민법의 관련규정은 그대로 둔 채 기관의 결의에 관한 특수한 문제만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2. 적용시기

- 상시적 법적용 vs 한시적 법적용
- 민법이든 특별법이든 비대면 결의를 허용하는 관한 규정이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면 앞으로 법인의 총회나 이사회 등은 코로나 팬더믹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현장회의 보다는 비대면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비대면 결의를 코로나 팬더믹 상황 등 한시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하도록 규정

하게 되면, 총회나 이사회는 현장에서 개최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므로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비대면 총회나 이사회 개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게 됨.

3. 법률에 담길 내용

- 첫째,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이사회 서면결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입법론으로는 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을 개정하여 공익법인에 있어 이사회 의결에 관해서는 감염병의 창궐 등 심각한 재난상황 인하여 이사들의 회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총회를 갈음하는 서면에 의한 결의, 일명 회람결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비대면 상황에서 법인 구성원의 결의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총회에서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함.
- 셋째, 전자투표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법인의 정관에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또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해 전자투표에 관한 법률적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투표가 치루어졌을 경우에 절차적 유효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V. 추가제언: 결론에 갈음하여

- 온라인총회 및 이와 결부된 비대면 결의를 평상시에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상법은 평상시에도 전자투표를 결의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사원총회를 영리법인의 주주총회처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됨. 만약 비영리법인에 대해 평상시에도 비대면 결의를 인정한다면 대면총회보다 비대면총회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비대면 총회가 보편화되면 온라인을 통한 총회의 참석이 용이한 장점도 있지만, 대면총회에 비해 총회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정책이슈2> 의결방식

온라인총회 의결방법과 전자서명 도입방안

이희숙(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온라인총회 의결방법과 전자서명 도입 방안

1.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더믹이 장기화되면서 비영리단체의 온라인 회의도 일상화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020. 3.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¹⁾, 이후 2020. 12.에는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허용됨을 밝혔다.²⁾

온라인총회 수요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당시 법무부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에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사원총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온라인 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온라인총회 및 이사회가 법률상 금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법해석은 온라인총회 가부 뿐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총회 상시 허용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온라인총회와 의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혼란이 많고, 정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도 전자서명이 일반화된 가운데 민법은 기명, 날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격으로 참여한 이사들로부터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온라인총회, 이사회 의결 방법과 의사록 작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온라인총회(이사회) 의결방법

-
- 1)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2020. 3. 5.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 2)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총리실, 비영리법인 총회 개최 방식에 원격통신을 통한 방식 추가 -”(2020. 12. 2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참고자료)

가. 사단법인 온라인총회 의결 방법

상법상 회사들의 경우 2001년 전자통지 제도를 시작으로 2009년 전자공고, 전자주주명부, 전자투표(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4년 전자위임장 제도가 도입되었다.³⁾ 그 외에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2012년에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되었고, 공동주택관리법은 법 제정 당시인 2015년도에 전자투표를 규정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21. 8. 10.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재난의 발생 등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법, 공익법인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에 대하여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결권 행사에 있어 혼란이 있다.

(1) 온라인총회 참석자의 의결 방법

민법은 총회 의결권에 관하여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경우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75조 제73조 제2항). 민법은 총회 정족 수 외에 구체적인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역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⁴⁾ 이를 분석하면, ① 정관에 규정이 있을 경우 표결 및 집계방법을 그에 따를 것, ②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음, ③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 ④ 찬성·반대·기권의 선택 부여, ⑤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집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온라인총회에도 이를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으며,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집계하면 될 것인데,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추후 판단의 문제가 있다.

3) 김순석,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연구 통권 제77호 (2017.1.), 2면.

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이 영상 및 음성 송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거수하거나, 개별 답변하는 방식은 현장에서의 거수, 기립 등과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장 총회에서 투표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도 설문조사, 투표 등 다양한 도구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적절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현장 투표 시 육안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점과 비교할 때, 전자투표 시 당사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본인 계정 로그인, 성명 표시, 본인 투표 결과 확인 등).

(2) 서면결의와 전자투표 (총회 개최 전 전자투표)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경우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5조 제73조 제2항). 즉, 온라인총회 시간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면결의에 전자투표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상법의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제368조의3)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제368조의4)를 구분하여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구별하고 있는 반면, 민법에서는 서면에 의한 결의만을 규정하고 있다.⁵⁾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한 사안에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⁶⁾ 전자문서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보지 않고, ① 전자문

5) 송호영, “비영리법인의 비대면 결의에 관한 고찰”, 비교법학 제28권 제1호(통권 제92호), 144면.

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서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②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경우 서면으로 본다(제4조의 제2). 안건 찬반에 대한 이메일 회람 등 위 요건을 갖춘 경우 서면 결의로서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일성 및 투표의 정확성이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서면과 준하는 전자적 의결의 유효성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관으로 전자적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관의 근거 없이 서면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한 경우 추후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해당 의결을 추인하는 방법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7)

정관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의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 상법의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또는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방법에 따른 전자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나, 민법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전자투표 본인확인 방법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 그 본인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8) 집합건물법령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 규약에서 전자문서 제출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완화한 경우 그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 위 입법례에서는 휴대전화 인증,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

7)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중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8)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방법
- 9)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2.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

인 외에도 자체 규약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 공동체의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을 규정하고 내규 등으로 본인확인, 의결의 정확성이 확인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규정한 후 그에 따라 진행한 경우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인정보 인증, 휴대폰인증, 개인 부여 번호 인증 등의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복수의 개인정보 기재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투표 결과를 제3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고, 투표 작성 변환의 추적이 어려운 경우라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자투표와 총회 소집 절차

총회 소집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¹⁰⁾ 민법은 사원총회의 소집절차와 관련하여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한 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종 총회 사건에서 “별도로 종종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종관행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종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¹¹⁾ 한편, 대법원은 신용협동조합 이사회 서면 결의와 관련하여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¹²⁾

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10) 김용덕, 주석민법 민법총칙 제5판, 한국행정사법학회, 890~891면.

1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

별도로 종종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종관행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종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민법이 총회 소집을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1주간 전에 통지하도록 한 것은 모든 사원에게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관에 근거를 두고 전자투표 1주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결 전 토의의 방법 및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총회 장소에 대한 통지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법은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관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없고, 총회 소집 기간과 목적사항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으로 사원의 토의, 의결 참여를 보호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총회 참여가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만으로 의결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투표를 위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단체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총회가 개최되고, 참석이 어려운 사원은 서면의결, 전자투표 방식 등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기사항 결의의 경우 법인 의사록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데(공증인법 제66조의 2),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자투표만으로 결의하는 경우 의사록 인증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련하여 법무부는 ‘공증인은 온라인 총회 의사록 참석인증 시 관계 법령을 엄격 준수하여야 하고,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예:의장실)에 직접 참석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검사하거나 공증인은 총회를 개최하는 법인 측에서 참석자의 동일성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검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다.¹³⁾

(4)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온라인총회 출석과 퇴장은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출석, 로그아웃 하면 퇴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여,¹⁴⁾ 온라인총회 접속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온라인총회도 서면 의결이 가능하므로 서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온라인총회에는 참석하였으나 결의에는 참석하지 아니한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민

1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13)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의사록 공증, 어떻게 하면 되나요? 총리실·법무부, 쉽고 명확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21. 3. 15.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14) 김순석 위 논문, 29면.

법은 출석사원이 결의에 참가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정족수 산정에 있어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원도 출석사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결의권이 없는 사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출석한 사원으로 계산하고,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출석한 사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¹⁵⁾

한편,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¹⁶⁾ 온라인총회의 경우 총회 경과 녹화, 접속 기록 보관 등을 통해 의사정족수 입증이 용이하므로 법적 분쟁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하여 법인은 녹화 및 기록 저장 보관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온라인 이사회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온라인 이사회가 다수 개최되고 있다. 이 사회의 소집, 결의방법, 결의사항 등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므로,¹⁷⁾ 민법상 재단법인의 온라인 이사회도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위 온라인총회와 동일한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서면결의가 불가능하므로(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 이사회 참석 없이 전자투표만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도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온라인

15) 김용덕, 주석민법 민법총칙 제5판, 한국행정사법학회, 898면.

1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17) 김용덕, 앞의 주석민법 800면.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이 표결방법으로 온라인투표를 하는 방식은 서면 결의가 아닌 이사회 진행 중 의사결정 방식의 하나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전자투표 도입 민법 개정 방안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 의할 경우에도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전자투표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민법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법률에 담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실무상 혼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시 등이 정부 업무 편람 등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개정안
제73조(사원의 결의권) ~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 ②사원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총회의사록 전자 서명 도입

민법은 총회 의사록 작성 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있다(제76조). 온라인총회 개최 시 원격으로 출석한 이사에 대하여 직접 의사록의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는 온라인총회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특히 위 규정은 서명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날인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구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전의 것)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인전자서명은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었으나(제3조 제1항),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제3조 제2항)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아래와 같은 민법개정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u>기명날인</u>하여야 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 ----- <u>기명날인 또는 서명</u>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u>기명날인</u>하여야 한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 <u>기명날인 또는 서명</u>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u>기명날인</u>하여야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②----- ----- <u>기명날인 또는 서명</u>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u>하여야</u> 한다.

4. 나가며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회의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상법,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등은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고,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관련 법 개정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민법 법인편 법체계는 수십 년간 그대로이다. 민법은 기본법으로 법개정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이 없어 구체적인 규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일반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고 최소한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단체의 자율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총회 개최 방식 등 구체적 사안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기관인 주무관청과 협의할 것으로 공지하고 있으나¹⁸⁾ 주무관청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온라인 총회 개최나 의결 방식 등에 대하여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과 더불어 온라인총회 감독 방향성과 구체적인 지침 등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1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참고자료”(2020. 12. 23).



<정책이슈3> 의사록인증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의 개선방안

양승원(공증인양승원사무소 변호사)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의 개선방안

I.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의 소개

1. 취지

1) 의사록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의사록 인증’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인증제도이다. 1970년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사건 처리 특례법”(이하 ‘간이절차특례법’)에서 의사록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부실등기를 방지함으로써, 정확한 법인정보의 공시를 통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의사록인증이 면제된다(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법 시행령 제37조의3).

1972년 개정된 간이절차특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최초로 규정하였다.

19)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대표, 공증전문 변호사, 대한공증인협회 이사, 법무부 임명 공증인.

2. 근거 법령

1)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1호** : 2009년 ‘상법상 소규모 회사’를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추가.

※ **2호** : 1972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최초 규정.

※ **3호** : 2017년 의사록 인증이 제외되는 경우를 추가.

- 도입 취지 :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한다(2017년 개정 공증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년>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3.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방식의 변천 -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의 경우

1) 공증인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방식(과거)

: 법인을 추가 지정할 때마다 공증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별표에 법인을 추가 열거.

2) 법무부장관 지정 방식(현재)

: 2010.2.4. 공증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무부장관 지정·고시 방식으로 변경.

- 취지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별표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 설립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까지 의사록 인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개선(2010년 개정 공증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4.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요건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분석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일 것

: 법인의 법적 성격이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또는 공법인인 경우에만 지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는 제외

2)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3)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4) 주무관청이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을 할 것

5)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할 것

5.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절차²⁰⁾

1) 비영리법인·공법인의 추천 신청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추천 신청을 해야 한다.

- 추천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요건²¹⁾을 충족해야 한다.

20) 이하 이 글 '5항'의 내용은 법무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안내문(2021.3.29.) 및 위 안내문에 첨부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서' 양식을 인용하였다.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공증 > 자료실)

①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의 공익성

: 법인의 정관, 설립근거 법령 등을 통해 그 설립 목적과 수행 사무의 각 해당 내용이 공익적인지 판단하여야 함(법무부 2021.3.29.자 안내문).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주무관청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법무부 2021.3.29.자 안내문).

- 주무관청 추천 신청시 필수 서류 : 주무관청에 따라 추가 필요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① 법인설립허가증

② 설립근거법령 : 설립허가증 하단에 있음.

오래 전에 설립된 경우 설립 근거 법령의 변경 여부 확인 요망.

③ 정관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기타 관련 서류 : ㉠ 주무관청의 추가 요구 서류

㉡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의 공익성’, ‘법인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주무관청의 추천

- 주무관청은 공익성 등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1항의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천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인을 법무부로 추천한다.

- 주무관청은 추천서에 해당 법인이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아래 내용(예시문)과 같이 기재한다.

- 아래 내용은 일부 예시이므로 해당 내용에 국한되지 말고 자유롭게 작성한다.
(분량에 따라 2페이지까지 작성되어도 무방).

21)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2020.12.15. 서울시 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시민, 재단법인 동천 공동 주최)에서 토론자인 송시현 변호사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최소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최소기준의 예로 후술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5가지 요건(국세청장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가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 인정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 예시문 >

○ 다음의 점에 비추어 볼 때 분쟁의 소지가 없음.

- ①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가짐(규칙 제0조).
- ② 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규칙 제0조, 정관 제0조).
- ③ 사업실적, 감사결과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규칙 제0조).
-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000의 허가를 받아야 함(규칙 제0조).
- ⑤ 임원의 선출 또는 선임시 000(주무관청 관련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정관 제0조).
- ⑥ 000이 당연직 이사, 000이 당연직 감사가 됨(규칙 제0조).

3) 법무부의 지정·고시

- 법무부는 주무관청의 추천이 접수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공법인에 대해 그 요건을 확인하여 추천이 타당할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
- 위 지정·고시는 1년에 4회 이루어지며, 지정·고시의 결과는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go.kr / 검색어 : 의사록 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음.

II.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의 개선 방안

1. 제도 개선의 필요성

법무부는 2021.3.29.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안내문을 통해, 주무관청의 추천 요건 설명과 추천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추천서 양식 제정 및 법무부의 지정·고시 횟수(1년에 4회) 등 지정·고시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공지하였지만, 여전히 추천 요건이나 지정·고시 요건 충족 여부 및 절차 등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주무관청이나 법무부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의 우려나 재량권이 남용(또는 일탈)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하 '법인') 지정 요건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법인이 '의사록 인증'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법인 본연의 공익적인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록, 나아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비영리법인)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공증인법상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추가하는 방안

1) 공증인법 개정의 필요성

법무부는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를 도입한 지 37년만인 2009년에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증인법을 개정하였다{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 의사록의 인증) 제1항 단서 제1호}.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등의 의사록 인증을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공증인법 개정의 이유는 법인 등기를 할 때 일률적으로 총회 등의 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여 소규모 회사가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2009. 5. 28., 공증인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등 참조).

영리법인 중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립총회 등의 의사록 인증을 면제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의사록 인증 제도의 순기능적 측면을 보건대 모든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을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예컨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²²⁾”**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이유로 소규모 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와 같이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의사록 인증을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2)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 외국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을 말한다.

* 2021.1.1.부터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 소득세법(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공증인법에 추가 명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의 법무부 지정고시 제도가 **공증인법 시행령상의 추상적 요건(제37조의3 제1항 제1,2호)**을 충족하는지를 추천 주무관청과 법무부가 **이중으로 심사하는 구조 자체에서 내재하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현장의 비영리법인들의 혼선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공증인법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공증인법 개정안(사건)

※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의 의사록 인증 면제 취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²³⁾**(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은 후술하는 법령의 규정과 같이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기준 및 심사에 의한 추천 및 지정, 사후 철저한 관리감독 등이 이루어

2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실무자들이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그 범위가 훨씬 넓다.

공증인법상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공익법인등이나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확장하지 않고 위 ①이나 ②법인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가능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으로 한정하여, 공증인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법인의 정관, 설립근거 법령 등에 의해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의 공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되며, 주무관청(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감독²⁴⁾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통상 없다고 판단된다.

의사록 인증을 면제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나 총회 등의 의사록의 사문서(의사록) 위조 등의 역기능 위험은 주무관청(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포함)의 관리 감독의 내실화를 통해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 공익법인 지정 취소,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장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공증인법이 개정된다면 **민법상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의사록 인증이 면제되는 경로는 ① 공증인법상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과 ② 법무부 고시에 의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이 두 가지가 될 것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서 생략).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24) 세법상 공익법인이 되는 순간 여러 의무들을 이행하여야 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법인세 또는 각 가산세를 부과 받는다.

※ **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김덕산, 공익법인의 정의와 범위, 한국공익법인협회)

1.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사용의무, 2.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3. 외부 회계감사 의무
4.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5.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6. 장부 비치 및 작성의무
7.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있는 이사, 임직원 수 및 비용에 대한 제한, 8. 결산서류 공시,
9.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제출 의무, 10. 특정기업 광고 금지,
11. 출연자와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12. 주식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제약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괄호 안과 단서 생략)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 법인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2.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다항 (생략).

3. 정관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단서 생략).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6.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7.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④~⑦항(생략)

3.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사무 처리지침 제정 방안

1) 지침 제정의 필요성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서 규정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요건이 추상적이고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주무관청 담당 공무원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고, 업무 미숙이나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업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법무부의 **법인 지정 요건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정 소요기간, 지정 여부 통지 절차, 자료 요구 및 제출 절차, 비지정 사유 통보, 불복 절차, 지정 효력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세분화**하여,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신청 및 지정 업무의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의 추천 업무 부담 감경 및 주무관청과 법무부 담당자의 적극행정(積極行政) 및 합리적 재량권의 행사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하는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2) 지침의 내용(사건)

- ① 추천대상 법인의 자격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공법인
- ② 추천 기관 : 현재는 주무관청, 향후 법인 소재 각 지방검찰청(총무과)으로 업무 이관 필요.

③ 추천 요건²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공개입찰 기준(도시정비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법무법인 등 선정 기준), 국민주택형 공영아파트 당첨 기준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거래처 공개입찰 기준과 같이,

위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 지정 요건중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의 공익성”과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세부 기준(아래 예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의 세부 항목을 신설)을 마련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화(예: 항목마다 1,2,3,4,5점 중 평가)한 다음, 합산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후술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자문위원회**’

에서 지정 여부를 법무부에 자문(건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공익성²⁶⁾ - 사업 목적·실적·기간, 시민의 권익 증진 기여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여도,
- ㉡ 투명성 - 비영리법인 홈페이지에 예결산 및 사업실적 공개 여부, 수입·지출 공개여부, 기부금 현황 및 사용 내역 공개, 경영 공시
- ㉢ 민주성 -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 진행 등 정상적 운영 여부, 총회 등 관련 분쟁 유무,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 정도, 회원들의 참여도
- ㉣ 개방성 - 신규회원 가입 가능성, 탈퇴의 자유 여부
- ㉤ 건전성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현황, 수입 등 재정 자립도, 내부 통제제도 유무(내외부 감사 유무, 감사보고서 유무), 상근 직원 유무, 상근 직원 숫자, 회원 수, 예산 규모, 설립연도

④ 추천 (재)신청 절차

25)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2020.12.15. 공동주최:서울시 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시민, 재단법인 동천) 발제문, 공증실무와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고찰 참조(양승원/공증인양승원사무소).

26)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할 것(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3조 제2호 참조)

⑤ 추천 기한 :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공익법인 추천기한 규정(제18조의3)과 유사한 규정을 만들어, 추천 기한을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법인 → 주무관청)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 (주무관청 → 법무부)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cf)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추천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제출.

* (비영리법인 → 국세청)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 (국세청 → 기획재정부)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전체메뉴 > 국민참여 > 주요질문모음 > 2019.07.12. 안내)

질문2> 지정기부금 신청 및 고시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접수마감일*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지정고시일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 주무관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추천서가 접수되는 날

⑥ 제출서류 보완 절차

⑦ 추천여부 및 비추천 사유 통지의 절차, 방법

⑧ 비추천 법인의 불복방법

⑨ 지정 기관 : 법무부(법무과 공증담당 수사관)

⑩ 지정 요건

⑪ 지정 절차 및 기한

⑫ 제출서류 보완 절차

: 지정 제외 전 사전 보완을 요구하여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 후 지정받거나 보완을 못 하더라도 지정제외 후 다시 재지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⑬ 지정여부 및 비지정 사유 통지의 절차, 방법, 정보공개청구

: 현재의 지정 제도는 법무부가 언제 지정할지 아니면 지정 거부당하였는지 알려

주지 않아 기약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인 추천 신청서 접수-추천 여부 심사-주무관청의 추천-지정 여부 심사-지정·고시” 각 단계별 소요기간을 지침에서 정한 후 신청한 법인에게 지정 여부 및 비지정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절차라 할 것이다.

지정 제외 법인은 지정 제외 사유를 알지 못하거나 납득할 수 없을 때 지정 제외 관련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情報公開)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음. 지정제외사유 관련 정보는 지정제외법인이 청구할 경우 위 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지정 제외 법인은 위 정보공개법을 활용하여 지정제외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재지정 신청할 때 참고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⑭ 지정 효력, 지정 법인의 의무 및 비지정 법인의 불복 방법
: 법무부의 지정 제외 결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 ‘처분’(處分)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정 제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 절차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⑮ 지정 · 고시 시기

4.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자문위원회 구성 방안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정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비영리법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내에 학계, 법조계, 대한공증인협회,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와 법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끝.

참 고 문 헌

1. 공증실무(개정판), 대한공증인협회, 2013.
2. 남상우, 의사록 인증방법에 관한 고찰, 대한공증인협회, 공증과 신뢰 2015(통권 제8호), 10쪽
3. 김준원, 개정 공증실무, 2010, 백영사
4. 법무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안내문(2021.3.29.)
(법무부 홈페이지 전체 매뉴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공증 > 자료실)
5. 법무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서 양식
(법무부 홈페이지 전체 매뉴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공증 > 자료실)
6. 김덕산, 공익법인의 정의와 범위, 한국공익법인협회(서울시 NPO지원센터 아카이브)
7.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2020.12.15.)
(공동주최 : 서울시 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시민, 재단법인 동천)
 - 공증실무와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고찰(양승원/공증인양승원사무소, 변호사, 대한공증인협회 이사)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사례 : 비영리법인 사례(심전호 / 충남시민재단 팀장)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사례:사회적협동조합 사례(민앵/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의 실무적 한계와 어려움(신권화정 /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안(송시현 / 재단법인 동천NPO법센터 변호사)



온라인총회 및 인증제외대상 법인현황과 제도운영방안

김홍정(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온라인총회 및 인증제외대상 법인현황과 제도운영방식

1. 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이사회 등(이하 '총회')에 대한 의사록 참석인증 가부 등에 대한 질의 증가에 따라, 온라인총회시 의사록인증 방식 검토
-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고시제도 운영현황 등 검토

2. 관계 법령

- 공증인법(제66조의2)은 **결의절차·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 등기 시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함

< 공증인법 >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후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이하 '지침') >

- 제10조(참석인증을 위한 검사)** ① 공증인은 위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확인에 따라 의사록 인증을 할 경우에는 법인의 의결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개회에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진행상황, 결의의 성립 여부를 검사 한다.
- ② 공증인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 주주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포함)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증인은 회의장이나 주변에서 고성과 폭언 등 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소란행위의 경위를 관계인에게 물어 볼 수 있다.

3. 온라인 총회시 인증 방식

-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 온라인 총회 의사록에 대한 인증을 할 경우(이하 '참석인증'),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현재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게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되나²⁷⁾, 상법상 회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에 유의
 - ※ 단,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경우라도 정관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총회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
 - 공증인으로서의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이하 '회의 주재 장소', 예: 의장실)에 직접 참석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검사해야 함²⁸⁾
 - ※ 공증인이 단순히 온라인(화상)으로만 총회에 참가하는 방식은 불가
 - 공증인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소집 장소' 항목에 ① 회의 주재 장소와 ② 온라인 접속 방법(사용 프로그램

27)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 2020. 12. 23.

28) 관계 법령(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공증인은 ① 의결장소에 직접 참석하고, ② 개회에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진행상황을 검사하고, ③ 회의장이나 주변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하므로, 온라인총회의 실제 진행장소에 참석할 필요가 있음

랩, 접속 경로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함

- 공증인은 의사록인증 과정에서, 온라인 총회에 관한 정보(① 온라인으로 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실, ② 참석자의 총회 접속 방법, ③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장소)가 총회의 소집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지된 사실과 의사록에 기재된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관련 서류(고지서, 소집통지서 등)를 부속 서류로 제출받아 공증인이 보존하는 인증서 뒤에 연철해야 함
- 공증인은 총회의 결의 절차 및 결과에 하자가 없도록 총회를 개최하는 법인 측에서 참석자의 동일성*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검사하여야 함

*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온라인 총회는 출석 및 결의 과정에서 참석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²⁹⁾를 전제로 허용

4.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 현황

-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고시제도는 공증인의 의사록인증 제도의 예외에 해당
- 공증인법(제66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37조의3)은 ① 설립 목적 및 수행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비영리법인·공법인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9) 일례로, 최초의 동일성 확인 이후 참석자가 계속해서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 앞에서 회의 및 결의에 참가한 경우라면, ‘출석 및 결의 과정에서 참석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공증인법 시행령 >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무관청이 해당 법인에 대한 지정요건 (①공익성, ②분쟁의 소지 없음)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임
- 현재까지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은 1,269개 법인('21. 12. 기준)
- 법무부는 주무관청이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고시 제도를 알지 못하여 비영리법인이 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1. 3.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의 안내 및 주무관청 추천 양식을 담은 공문을 배포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제도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디지털시대, 비영리법인 의사결정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 회의

녹색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시NPO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환경운동연합